#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78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구자근・김선교・권영세

박준태 • 인요한 • 김성원

박덕흠 · 김도읍 · 주진우

조지연 • 박형수 • 유상범

이만희 · 신동욱 의원

(14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간첩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시 상황을 고려하여 1953년에 만든 법으로 현행법으로는 북한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하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오늘날의 안보 위협은 적국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우방국·非우방국 등에 의해서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이들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오늘날의 안보 위협이 단순히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간첩행위를 넘어서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고 국내 정책 개입 등 영향력 공작을 자행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으로 국가기간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및 내정간섭 등 영향력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및 제98조, 제102조, 제104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중 "間諜하거나"를 "국가기밀(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 등 국가에서 지정·관리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탐지·수집·보관·누설·전달·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거나"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외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 ① 외국정부, 외국에 소속되거나 외국 지배하의 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 다)에 소속되어 외국등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안보위협행위"라 한다)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간첩 행위
- 2.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 3. 정부정책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
- 4.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국가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마비시키는 행위
- ② 외국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외국등의 이익을 위하여 안보위협행위를 한 자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외국 정보기관 소속인 자가 안보위협행위를 한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형의 1/2을 가중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행 정 안 혅 개 第98條(間諜) ①敵國을 爲하여 間 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 가기밀(국가핵심기술・방위산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업기술 등 국가에서 지정・관 리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탐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지 · 수집 · 보관 · 누설 · 전달 · 중개(이하 "간첩"이라 한다)하 거나----.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2(외국 등에 의한 안보 위협) ① 외국정부, 외국에 소 속되거나 외국 지배하의 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외국등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안보위협 행위"라 한다)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간첩 행위 2.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 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 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 는 행위 3. 정부정책 또는 외교적 관계

<u>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u> <u>행위</u>

- 4.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국가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거나 마비시키는 행위
- ② 외국등으로부터 금품을 받 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 공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외 국등의 이익을 위하여 안보위 협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외국 정보기관 소속인 자가 안보위협행위를 한 경우에 제1 항에서 정한 형의 1/2을 가중 한다.
- 第102條(準敵國)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第104條(同盟國)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2條(準敵國)(생략)

<신 설>

第104條(同盟國)(생략)

<신 설>